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21
----------	-------

발의연월일 : 2022. 4. 27.

발 의 자 : 정필모 의원

찬 성 자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홍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홍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김태년 · 김한정 · 김희재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민병덕 · 민홍철 · 박광온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서영교 · 서영석 · 설 훈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윤희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광재 · 이동주 · 이병훈
이상민 · 이상현 · 이성만
이소영 · 이수진^(비) · 이수진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해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정태호 · 조승래 · 조오섭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황운하 · 황희의원
(17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3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이사 추천 및 감사”를 “운영위원 및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사 및 감사”를 “운영위원 및 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사 및 감사의”를 “운영위원 및 감사의”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의 임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 임명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다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4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정한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가.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명.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한정한다)

6.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한국교육방송공사에 한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이 임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

공사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각 추천주체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신규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임명하는 운영위원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천 비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추천 주체들과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2. 한국방송공사의 <u>이사 추천</u> <u>및 감사</u>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u>이사 및</u> <u>감사</u>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u>사장·이</u> <u>사 및 감사의</u> 임명에 관한 사 항 5. ~ 29. (생 략) <u><신 설></u>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u>운영위원 및</u> <u>감사</u> ----- 3. ----- <u>운영위원</u> <u>및 감사</u> ----- 4. ----- <u>운영위원 및 감사의</u> ----- ----- 5. ~ 29.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u>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u> <u>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u> <u>영위원의 임명</u>) ① <u>방송통신위</u> <u>원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u> <u>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u> <u>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u> <u>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u> <u>공사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u> <u>임명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u> <u>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u> <u>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다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4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정한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가.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다.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
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기자
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명.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 추천하는 사람 4명(한국방
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한정한다)

6.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 관
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한국교육
방송공사에 한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이 임명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각 추천주체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